

간중초등학교 학교 규칙

제정 2000. 12. 16.

제1차 개정 2001. 2. 23.

제2차 개정 2003. 1. 16.

제3차 개정 2005. 2. 25.

제4차 개정 2006. 2. 25.

제5차 개정 2011. 4. 13.

제6차 개정 2013. 2. 20.

제7차 개정 2014. 4. 9.

제8차 개정 2017. 2. 6.

제9차 개정 2018. 4. 11.

제10차 개정 2020. 3. 1.

제11차 개정 2021. 2. 4.

제12차 개정 2022. 4. 13.

제13차 개정 2023. 2. 8.

제14차 개정 2023. 4. 25.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간중초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전라북도 완주군 용진읍 간중길 39(간중리 616-1)에 둔다.

제 2 장 수업연한, 학년, 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받은 자는 1회에 한하여 조기진급,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제5조(학년·학기) 학기는 매 학년도를 2학기로 나누되, 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① 초·중등교육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제3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여름방학 3. 겨울방학 4. 개교년월일 5. 재량휴업일

② 제1항 2호, 3호, 4호, 5호의 휴가기간은 법정 수업일수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실시한다.

③ 학교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자체 없이 교육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실습 또는 등교를 시킬 수 있다.

제 3 장 학급편성 및 학생정원

제7조(학급편성) 학급편성은 교육장이 통보하는 학급편성 기준에 의하여 편성한다.

제8조(학급정원)

① 학급정원은 교육장이 통보하는 학급편성 기준에 의한다.

② 학교장은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제 4 장 교과과정, 수업일수, 평가, 과정수료, 졸업

제9조(교과)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령에 의한다.

제10조(방과후 교육활동) 학교장은 학생의 방과후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육수요자와 충분한 협의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주5일 수업제 적용으로 매학년 전라북도교육청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다만, 학교장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체험학습)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교환학습, 단체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본교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에 의거 학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5일 이내로 한다.

③ 현장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테마중심 현장체험학습 기간과 도·농간 체험교류학습 기간은 2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실시 여건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④ 현장체험학습의 활동유형은 활동중심 현장체험학습, 학습체험중심 현장학습, 야영수련식 체험학습, 학교간 개별위탁 체험학습, 학교간 자체집단 체험학습, 가족단위 여행 체험학습, 훠사랑 체험학습 운영 등으로 한다.

⑤ 테마중심 현장체험학습과 도·농간 체험교류학습의 운영방안은 필요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학교장이 결정하여 시행한다.

⑥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 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

함하여 연 15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 ⑦ 이 외 현장체험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기타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은 전라북도교육청 체험학습 운영 계획과 본교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에 의한다.

제13조(평가) 학교장은 평가시기,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4조(졸업)

- ①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②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장애인의 교육에서의 차별 금지)

- ① 장애를 이유로 입학 지원 거부, 전학 강요, 전입 거부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② 특수교육과 관련한 서비스 제공에서 차별하지 않는다.
③ 특정 수업이나 실험 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의 제한이나 배제, 거부가 있어서는 안 된다.
④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이 아닌 자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서류를 요구하지 않는다.
⑤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

제 5 장 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

제16조(취학의무의 유예 면제 등)

- ①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는 학교장이 의무 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유예 또는 면제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읍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취학의무의 면제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1. 질병 등으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
 2. 행방불명 중인 자
 3. 외국에서 취학하고 있는 자
 4. 기타 학교장이 면제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 6 장 입학, 전학, 편입학

제17조(입학 시기 및 편입학 시기)

- ①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편입학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 제18조(입학자격)**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본교 통학구역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①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 만 6세에 도달한 적령아동 및 취학유예를 받은 학령아동
② 학생수용능력에 여유가 있는 경우 교육장이 학교별로 취학을 허용할 수 있는 만 5세의 아동으로 고시한 아동

제19조(취학학교의 변경)

- ①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 외의 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의하여 입학을 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아동의 거주지 관할 읍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전학) 전학의 절차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다.

제21조(편입학)

- ① 외국체류 중 귀국한 아동의 편입학은 체류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한다.
②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이어야 한다.
③ 제①항의 편입학 아동은 학교장이 요구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2조(목적) 이 지침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호, 2012.10.29.)에 따라 초등학교의 장이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주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3조(시행 방침)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 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발굴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조기에 계발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학부모와 교원 대상으로 조기진급 등에 관해 홍보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③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학교의 실정에 맞게 운영한다.
④ 조기진급 등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⑤ 조기진급 등의 대상자 선정 시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을 최대한 유지한다.

제24조(조기진급·조기졸업)

- ①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 하고자 하는 경우, 초등학교는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②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졸업 하고자 하는 경우 초등학교는 5학년에서 조기졸업할 수 있다.

제25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기준) 초등학교장이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① 초등학교 학생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통합교과)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 또는 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으로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대표로 참가한 자

제26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은 매학년 초 1개월(3월 말) 이내에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학년초 2개월(4월 말) 이내에 한다.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24조의 기준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하 “조기진급·졸업 대상자”라 한다)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이 제③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제27조 제①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⑤ 조기진급·졸업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⑥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① 학교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①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학교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초등학교 학생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⑦, ⑨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⑦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③ 학교장이 제①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제27조 제①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④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

칙으로 정한다.

제28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5조 제④항에 따른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제26조 제③항에 따른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 ⑤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 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 ⑥ 제①항부터 제⑤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제27조 제①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 ② 제27조 제①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①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 8 장 학생의 포상과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제30조(학생포상) 학교장은 품행이 바르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 및 효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학생의 기능이 우수하다고 인정한 자 또는 공로가 남보다 뛰어난 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31조(학생의 징계)

-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단, 어떠한 종류의 제벌도 허용하지 않는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님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③ 학생의 징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후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출석정지

제32조(징계이외의 지도방법) 징계이외의 지도방법은 학교에서 학습권과 교육권의 보호 및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으로, 교육상 행해지는 여러 가지 불이익 처분인 학생생활지도의 한 방법으로 신체적·정신적 발달단계 및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항과 같이 적용한다.

① 교육상형별로 다음의 지도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생각하는 책상(교실 뒤편에 마련된 책상에서 자기감정 통제하기)
2. 성찰 교실(상담실에서 관리자나 상담교사와 함께 자기감정 통제하기)
3. 사과편지 쓰기(학생 간 괴롭힘이 발생 했을 때)
4. 반성 캠페인(문제 행동에 대한 캠페인성 문구 쓰기)
5. 선생님, 부모님께 서명 받아오기(문제행동에 대해 기술하게 한 후)
6. 운동장 걷기의 체력단련하기(문제행동에 따라 목표치를 달리하기)

② 적용방법별로 다음의 지도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예화자료를 읽거나 보고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기
 2. 다양한 대체 활동(급식정리, 칠판지우기, 쓰레기통 비우기, 분리수거하기)
 3. 자신이 선택하여 외부 또는 교실 봉사활동
 4. 학급자치규율(학급규칙)을 통한 문제행동지도
- ③ 기타 징계이외의 지도방법에 관한 세부규정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33조(두발·복장 등 용모) 학생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인격을 존중하되,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두발은 자유로이 하되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 ② 옷차림은 항상 검소하고 단정하게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 ③ 신발 및 가방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검소한 것으로 사용한다.
- ④ 실외화를 신고 현관까지 와 실내화로 갈아 신으며, 실내화를 신고 등·하교를 하지 않는다.
- ⑤ 얼굴에 지나치게 짙은 화장을 하지 않는다.

제34조(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소지품 검사는 반드시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급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은 지양하되 다음 각 항과 같이 적용한다.

- ① 학생은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라이터, 성냥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흥기류(공구류, 칼 등) 등을 소지하여서는 안된다.
- ②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①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또는 교감 입회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제③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 ⑤ 제②항에 따른 소지품의 검사는 남학생과 여학생을 분리하여 학생들이 없는 공간에서 별도로 담임교사 또는 생활지도 담당교사(남, 여)를 두어 실시한다.

제35조(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소지는 학부모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항과 같이 적용한다.

- ① 등교와 동시에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하교 후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다.
- ③ 제①항의 사항을 어기고 교내에서 또는 수업 중 휴대전화 벨이 울렸을 경우가 발견되면, 첫 번째는 구두주의, 두 번째는 일정시간 사용제한, 세 번째부터는 회수 후 담임교사가 보관하거나 학부모와 상담하고 돌려주도록 한다.
- ④ 기타 전자기기의 사용 제한: MP3 플레이어, PMP, PDA, 디지털 카메라, 게임기기, 등에 대해서도 본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을 제한한다.

제36조(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학생생활협약)을 선정하여 생활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제37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 ① 본교의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생, 학부모, 교원대표로 구성하며(인권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포함 가능), 학생의 비율은 40%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생활지도 업무 담당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학년도를 기준으로 삼아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는 회의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한다.

제 9 장 학생의 자치활동

제38조(학생의 자치활동 보장) 학교의 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장 교권보호

제39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 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 따라 간중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간중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장 학칙 개정

제40조(학칙개정)

- ① 학칙의 개정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협의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고, 교육장의 인가를 받은 후 시행한다.
- ② 학교장은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차 개정 2014.4.9.)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4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차 개정 2017.2.6.)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차 개정 2018.4.1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0차 개정 2020.3.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1차 개정 2021.2.4.)

1. (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2차 개정 2022.4.13.)

1. (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3차 개정 2023.2.8.)

1. (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3차 개정 2023.4. .)

1. (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12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제41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 ①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42조(학업중단숙려제)

- ①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법(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부 칙(제1차 개정 2001.2.23.)

1. (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2. (시행세칙) 이 학칙은 시행 상 필요한 경우 시행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제2차 개정 2003.1.16.)

1. (시행일) 이 학칙은 이 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2. (시행세칙) 이 학칙은 시행 상 필요한 경우 시행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제3차 개정 2005.2.25.)

1. (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2. (시행세칙) 이 학칙은 시행 상 필요한 경우 시행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제4차 개정 2006.2.25.)

1. (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2. (시행세칙) 이 학칙은 시행 상 필요한 경우 시행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제5차 개정 2011.4.13.)

1. (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2. (시행세칙) 이 학칙은 시행 상 필요한 경우 시행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제6차 개정 2013.2.13.)